

[]중앙
[]광역시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지정 신청서
[]기초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"√"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,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
		30일
신청인	명칭	사업자등록번호/법인등록번호
	성명(대표자 성명)	생년월일
	사무소 소재지	전화번호

「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[]중앙 []광역시 []기초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농림축산식품부장관, 광역시장, 특별자치시장, 도지사, 특별자치도지사 또는

시장·군수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정관 또는 조직 운영 규정에 관한 서류 사본 2. 인력 보유 현황 및 배치계획서 3. 업무수행계획서 4. 업무수행체계 및 조직에 관한 서류 5. 최근 2년간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조사·연구 실적 목록(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사업자등록증명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의 위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※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

신청인 처리기관: 농림축산식품부, 광역시, 특별자치시, 도, 특별자치도 및 시·군(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 담당 부서)